

# UR협상타결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

車 東 炯\*

## 1. 서 론

지난 '86년에 태동하여 7년을 끌어온 UR협상이 작년 12월 15일에 타결되었다. 금번 UR협상은 1947년 GATT 체제 성립 이후 8차례 가졌던 어느 라운드보다도 광범위한 협상이다. 전통적인 공산품의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 등 새로운 이슈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UR협상의 타결로 이제 세계는 각국의 시장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하나의 지구촌화되고 있으며, 이른바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국제교역질서의 재편은 불가피하게 세계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 및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금번 UR협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협상타결이 우리 수출입 및 무역 관련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UR협정의 주요내용

금번 UR협정의 내용은 관세, 비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시장접근분야, 개방화시대에 다자간 규범의 명료성 제고를 위한 규범제정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 가. 시장접근분야

UR 시장접근분야 협정으로 관세가 대폭적으로 인하되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는 한편, 그간 GATT 체제내에서 규율하지 못하였던 농산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우선 공산품의 관세율이 '86년 9월 대비 1/3 이상 인하되고 양허대상품목의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며, 철강, 건설장비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 商工資源部 貿易政策課 事務官

이러한 관세율 인하는 '67년 케네디라운드'의 35% 일률적 인하, '79년 동경라운드'('73.9~'79.11)의 33% 인하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국제교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비교역품목으로 취급되었던 농산물, 서비스분야의 교역이 자유화된다.

농산물은 그동안 UR협상에 있어 각국의 입장차이가 가장 컸던 분야이나 이제는 모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고 예외없는 관세화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농산물이 '97년 7월까지 개방이 불가피하며, 쌀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 차에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국제교역에 있어 비중이 계속 증대되어 온 서비스분야는 금번 UR협상으로 국제규범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투자, 인력이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교역이 공산품 중심에서 서비스 등 비공산품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나. 규범제정분야

규범제정분야 협정은 그동안 GATT 규범이 변화하는 국제무역질서를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개방화시대에 맞게 다자간 무역규범의 명료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동 분야는 복잡다기한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줄거리는 국제무역의 왜곡효과를 가져왔거나 가져오는 무역제도를 점차 없애고 무역관련 규제조치의 발동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다.

우선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GATT 체제를 벗어나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섬유류교역

이 자유화된다. 섬유쿼터는 '9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유화되어 10년 후인 2005년에는 완전히 GATT 체제에 복귀하게 된다. 또한 셰이프가드협정에 의해 선진국이 남용해온 회색조치도 협정발효 후 4년 이내에 모두 철폐된다.

이와같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철폐와 함께 국제무역의 왜곡효과를 유발하는 보조금의 지급도 엄격히 규제된다. UR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종류를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별하고, 직접적인 무역 왜곡효과를 가져오는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로 사용되어 온 반덤핑 부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UR 반덤핑협정안에서는 원가이하판매의 정상가격 인정, 조사종결을 위한 절차강화 등으로 수입국의 반덤핑조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금증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셰이프가드는 최초 발동 3년간 보상·보복을 면제함으로써 발동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수입관련 절차면에서도 규정의 명료성과 구체성이 확립되었다. MTN Code의 하나였던 수입허가절차협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의 유지의무가 한층 강조되고, 원산지규정에서도 판정기준의 구체성이 보강되고 협정발효 후 3년내에 통일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새로운 규범분야로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에서는 투자에 대한 각종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적전 검사협정에서는 수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자의적인 선적전 검사를 금지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UR협상내용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각국의 시장개방폭을 넓히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부담보다는 혜택을 받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우선 주요국의 관세율 수준이 UR 이전에 비해 1/3 정도 인하여 직접적으로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기관인 GATT, OECD 등이 UR이 타결되면 세계 경제는 수년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간접적인 수출증대효과도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선진국의 규제를 받으면서 수출하던 품목의 경우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활동이 순조로워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섬유쿼터, VER,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를 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92년 현재 63억달러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품목의 수출증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의 관세율 인하로 인해 수입증대 등 산업피해가 우려되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R 관세협상에서 관세율을 '99년에 8.2%로 인하하게 되어 있으나, '94년 현재 평균관세율 7.9%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세인하 부담이 크지 않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UR 타결로 인한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수출증대효과는 커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의 계량적 분석에 의하면 UR

협상타결로 인하여 수출은 50억달러, 수입은 5억달러 증가하여 대략 45억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무역관련제도에 미치는 영향**

앞서 본 바와 같이 UR 타결로 인한 대외 무역 여건은 우리나라 무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UR 규범에 따른 국내 무역관련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여 다소 부담이 된다.

물론 '80년대 후반 GATT 11조국으로 이행이후 수입자유화계획 추진 등으로 무역관련제도를 꾸준히 선진화시켜 왔으나 금번 UR협정은 종전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명료화·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수출지원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R협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현행 수출지원제도중 금융분야에서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등 세제분야에서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등 다수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나 수출보험 등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관리제도인 섬유쿼터, 수출자율규제도 제도철폐시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관련절차 및 제도도 국제규범과 상치되는 분야가 많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수입절차의 중립성·객관성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문제가 되며, 개별법상 수량규제적 수입추천은 협정안과 상치된다.

산업피해 구제제도는 세이프가드, 반덤핑협정에서 새로이 마련된 개념과 제도를 관련법규에 보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4. 향후 대응방향

UR협상타결로 인하여 앞으로 10년내에 세계 경제의 개방화·국제화는 더욱 깊숙히 진전될 것이다. UR협정은 21세기 국제무역질서의 기본규범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제분업구조의 개편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국제무역에 있어 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은 사라지고 경쟁력이 강한 자만이 생존하는 철저한 경쟁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각국의 관세율이 인하되어 유리한 무역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나 우리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없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면, 과연 Post UR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 국제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므로 기업경쟁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정부지원 등 보호막이 걸리는 상황에서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지력과 인력을 합친 기술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노동, 금융, 교육, SOC 등 모든 분야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어 고질의 서비스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생산요소의 고비용구조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규제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탱할 수 없으므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UR협상결과가 품목별·시장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출증대 및 시장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철강, 반도체,

가전제품, 섬유 등 무세화 및 관세 대폭 인하품목인 경우에는 주요 시장별로 수출확대전략을 수립하고,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상품, 석유화학 등 기초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개도국 및 동구권에 대한 시장진출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UR협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될 것이므로 이제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국내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본다.

섬유, 신발 등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라든지, 전자 및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조립산업을 개도국 등지에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국제분업구조의 개편속에서 해외진출거점을 확보해야 하겠다. 아울러,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

세째, 무역관련제도를 국제 규범에 맞게 국제화·선진화해 나가야 하겠다. 무역관련 제도는 국내적으로도 개편의 필요성이 컸던 만큼 금번 UR타결을 계기로 삼아 적극 추진하여 경제 및 무역규모에 걸맞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하겠다.

무역제도의 개편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무역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UR협정에서 주어진 경과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중히 추진하여 과도기적 조정기간에 민간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수출지원제도의 개편은 수출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UR협정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제도를 정밀 검토하여 수출업계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은 보조금적 요소(정부지원, 혜택, 특정성)를 없애 허용

(39 page에 계속)

시멘트공장에서 페타이어를 시멘트킬른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시멘트공장에서 페타이어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지만, 시멘트공장에 따라서는 30~35% 정도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시멘트공장의 설계와 수송여건에 따라 페타이어의 투입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페타이어의 대

량처리방법으로는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망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페타이어 분말을 아스팔트에 혼합해서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1997년경에는 약 7,000만개의 페타이어가 이와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의 5개 대학에서는 페타이어와 석탄을 혼합하여 석유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성공을 거둬에 따라 이의 조속한 실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 page에서 이어짐)

보조금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가격보전 위주의 지원시책에서 품질, 마케팅, 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 강화 위주로 개편해야 하겠다.

섬유쿼터, 수출자율규제 등 수출관리제도는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운용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섬유쿼터는 기본쿼터를 줄이고 개방쿼터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자유로운 수출활동을 가로막는 수출자율규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허가절차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경쟁력 강화와 병행하여 해당품목수를 계속 축소하여 종국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수입관련 개별법은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개도국의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이프가드협정과 반덤핑협정에 맞게 법령·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네제, UR협상타결에 따른 후속 통상교섭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UR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는 양자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수출자율규제 등 우리나라에 불공정한 수입규제가 조속히 철폐되도록 통상교섭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정보수집노력도 강화하여 수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제주체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령, 제도가 선진화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관행과 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국제화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가치기준을 편협한 내국중심에서 벗어나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반기업주의, 반외국인주의, 집단이기주의 등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개방화시대의 경쟁력이란 결국 국민 개개인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의 경쟁력을 함양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